

정책 이슈페이퍼 13-04

석탄산업합리화정책 출구 전략

유동현 외

목 차

- I. 배경 및 문제점 / 1
- II. 조사 및 분석 결과 / 5
- III. 정책 제언 / 9
- VI. 기대 효과 / 16
- <참고자료> / 18



에너지경제연구원
KOREA ENERGY ECONOMICS INSTITUTE

I . 배경 및 문제점

1. 연구 배경

- 합리화정책 시행 지속으로 석탄 생산은 급속히 감소하나 연탄 수요는 일정 수준에서 유지
 - 2012년 말 현재 우리나라의 석탄광업은 대한석탄공사(이하 석공)의 장성, 도계, 화순광업소와 민영탄광인 (주)경동 상덕광업소, (주)태백광업의 5개 광업소 체제로 운영
 - 이는 1989년부터 시작된 석탄산업합리화정책(이하 합리화정책) 시행으로 석탄광업소가 급격히 줄어든 결과
 - 무연탄 생산량이 연탄 수요와 유사한 상황에 이른 지금은 광업자대책비(전업지원금) 지급을 규정한 합리화정책이 무연탄 공급부족을 초래할 수 있는 정책으로 평가
 - 전업지원금을 수령을 위한 감산 요구 존재
 - 서민 연료로 분류되는 연탄은 규제된 가격으로 거래되고 있어 연탄 수요는 일정한 수준에서 유지
 - 생산원가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연탄은 가정을 비롯해 일부 상업용으로 소비하고 있으며, 가정용 수요는 수요층의 에너지 전환 경직성 특성이 존재
- 합리화정책에서 지원하는 전업지원금을 받기 위한 근로자 일시 퇴직이 생산 감소원인 중 하나로 작용

- 석탄광업의 생산인력인 직접부가 퇴사하면서 채탄인력이 줄어들어 인당 석탄생산효율은 감소하고, 인력감소→생산량 감축→생산원가 상승으로 이어지는 악순환 심화
- 석탄생산 자체가 어려워지는 한계상황에 도달하기 전에 석탄산업 합리화정책을 종결하기 위한 출구전략 마련이 요구됨.
- 정부가 G20 회의에서 2020년까지 화석연료 보조금 철폐를 약속
 - 정부 보조금으로 유지되어 온 석탄산업의 자율 경영기반을 2020년까지 마련해야 함.

2. 연구 필요성 및 목적

□ 연구 필요성

- 석탄산업합리화정책(이하 합리화정책)이 1989년 수립된 이후 24년간의 정책 추진을 통해 무연탄 생산량은 연간 약 200만톤 규모로 축소
 - 합리화정책 추진으로 비효율 탄광이 대부분 정리되어 합리화정책은 최근까지는 성공적
 - 현재 생산을 지속하고 있는 5개의 가행탄광도 탄맥이 깊어짐에 따라 생산 한계 상황으로 진행 중
- 한편, 연탄 수요는 그동안 지속적으로 감소해 왔으나 소득수준 증대와는 별개로 향후에도 일정량의 연탄수요가 유지될 것으로 예상
 - 연탄수급 정책을 포함한 정부의 석탄산업 정책에 대한 변화가 요구됨.

□ 연구 목적

- 석탄 공급 감소 가능성이 점점 커지는 가운데 석탄 수요는 일정 수준을 유지하는 상황 아래에서 합리화정책의 평가를 통해 석탄산업에 대한 향후 정책 방향을 설정해야 할 시점임
- 그동안 추진되었던 합리화정책 성과 평가를 바탕으로 석탄광업 및 연탄수요를 고려한 가운데 합리화정책 종결을 위한 전략 마련이 요구됨.
- 본 과제는 석탄광업과 연탄 부문에 대한 합리화정책 종결을 위한 정책대안 제시와 함께 석탄광업 자립기반을 도출하는 데 연구 목적이 있음.

[참고] 용어 설명

1. 합리화정책

- 합리화정책은 국내 무연탄 공급이 수요를 훨씬 초과하여 공급초과로 인한 사회적 문제 발생이 우려되었던 1980년대 말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도입된 정책임.
- 1986년 아시안 게임과 1988년 서울 올림픽 준비과정에서 서울시는 1985년에 신규주택에서의 연탄사용 금지를 발표
- 이 당시 도입 추진 중이었던 LNG의 본격적 공급이 1987년부터 예상되는 상황이었음.
- 갑작스런 국내 무연탄 생산 감소는 인위적 폐광 내지는 감산을 동반하였고 그 과정에서 정부는 전업지원금과 광업자대책비라는 새로운 정책을 도입하게 됨.
-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표현 중 '출구전략'은 위에서 설명한 '합리화정책' 종결을 위한 이행전략 임.

2. 전업지원금

- 합리화정책 아래에서 근로자가 석탄광을 퇴직할 때 「석탄산업법」에 근거하여 부가적으로 받을 수 있는 항목
 - 전업지원금은 전업준비금과 특별위로금으로 구성됨.
 - 13년 이상 근속한 석탄광 근로자는 최대 41.016개월분(통상임금 기준)의 전업지원금을 받을 수 있음.
- 전업지원금은 정년 기준으로 잔여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 최대 3개월분을 지급받을 수 없어 근로자는 정년 3년 전에 전업지원금 수령을 원함.

3. 광업자대책비

- 합리화정책이 감산을 지향하는 것이므로 「석탄산업법」에서 광업자에게도 생산 손실을 보상해 주는 규정을 도입
 - 운영하던 탄광을 폐광(폐광대책비)하거나 부분적인 감산(감축지원금)을 하면 광업자대책비를 받을 수 있음.
 - 폐광대책비는 직전 3년 평균 생산량을 기준으로 하며, 감축지원금은 전년 대비 5% 이상 감산하는 경우 해당됨.

II. 조사 및 분석 결과

□ 에너지 산업으로써 석탄산업

- 무연탄 최대 생산량을 기록했던 1988년 1차 에너지 기준 석탄 비중은 15.2%, 석탄산업의 GDP 비중은 0.5% 이었으나, 2012년 기준으로는 각각 0.4%와 0.03%로 축소
- 국민소득 증가, 주택형태 변화, 청정연료 선호 및 국내 석탄생산비 상승 등으로 석탄수요가 지속적으로 감소
- 1988년 2,429만 톤이었던 석탄생산량은 2012년 209만 톤으로 줄어 1988년 생산량의 8.6% 수준에 그침.
- 1989년부터 시행된 합리화정책에 따른 폐광·감산(탄광 노사 간 합의로 자율결정)의 결과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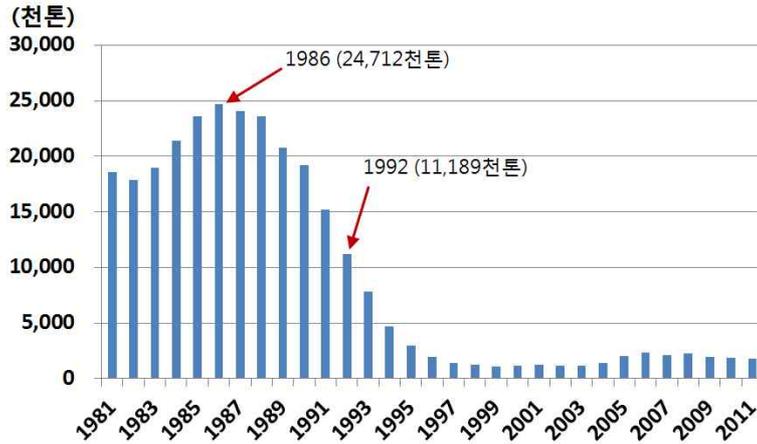
<표 2-1> 석탄광업의 변화

	1988	2012	차이
탄광 수(개)	347	5	△342
생산량(만톤/년)	2,429	209	△2,220
근로자 수(명)	62,259	3,808	△58,451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석탄산업 통계」, 2013.5

- 무연탄 수요 관점에서 가정·상업용 무연탄 소비를 보면, 1986년 2,471만 톤의 정점을 지나 6년이 경과한 1992년에 절반 이하인 1,119만 톤으로 급격히 감소

[그림 2-1] 가정·상업용 무연탄 소비 추이



자료 : 에너지경제연구원·지식경제부, 『에너지통계연보』, 2012

- 1987년 무연탄 2,427만 톤 생산에 연말재고 1,045만 톤, 1988년 2,430만 톤 생산에 연말재고가 1,113만 톤에 이르는 상황에서 정부는 무연탄 공급과잉을 해결하기 위해 공급 부문 중시 정책을 채택
 - 무연탄 수급을 정부가 관리하는 상황에서 무연탄 공급과잉을 해결하기 위한 대책 마련의 계기가 되었음.

□ 수요를 충족하지 못하는 석탄 공급

- 연탄 수요와 석탄 생산량을 고려하여 정책적으로 결정하는 발전용 무연탄 소비량이 2005년과 2006년에 200만 톤 수준이었으나 2010년과 2012년에는 각각 84만 톤과 59만 톤으로 급격히 축소됨.
 - 연탄 공급부족 사태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발전용 소비를 정책적으로 축소한 결과임.
 - 합리화정책 지속으로 연탄공급 부족이 우려되는 상황에 직면

<표 2-2> 국내 무연탄 수급 현황

(단위: 천 톤)

	2005	2008	2010	2012
소비	4,467	4,260	2,698	2,424
연탄용	2,010	2,289	1,859	1,833
발전용	2,354	1,960	839	591
공급	11,855	7,057	4,551	4,052
이월	8,894	4,231	2,226	1,720
생산	2,832	2,773	2,084	2,094
수입	-	10	170	192
재고 (당해년도 방출)	7,388 (1,118)	2,797 (1,419)	1,853 (288)	1,628 (62)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석탄산업 통계」, 2013.5

- 무연탄 재고 역시 2005년 739만 톤에서 2012년 163만 톤으로 급격하게 감소함.
 - 재고 무연탄은 연탄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적 비축이지만 합리화정책 지속으로 추가적인 석탄 감산이 재고 축소도 우려됨.
- 2013년 연탄 수요는 179만 톤(산업통상자원부)으로 추정되며, 추가적인 연탄 가격 인상이 없다면 무연탄 공급부족이 현실화될 수 있음.
 - 최근 4년 정도 유지되어온 연탄 소비수준인 180만 톤 정도에서 연탄 수요가 유지된다고 가정하고
 - 합리화정책이 지속된다면 주기적인 감산을 통해 무연탄 공급 감소폭이 더 커질 것으로 추정되어 연탄 공급부족 현실화 가능성 증대
 - 반면에 급격한 연탄가격 인상이 없는 한 연탄수요 감소 기대는 곤란

□ 정부지원금으로 유지되는 연탄 가격

- 채탄 작업장이 깊어지고 탄질이 저하되는 등 무연탄 생산 여건이 점차 과거에 비해 상대적으로 나빠져 무연탄 생산비 인상요인이 있음에도 연탄가격에 반영하지 못함.
- 서민연료로 분류되는 연탄 소비자 가격은 정부지원금을 통해 낮게 유지되고 있음.
- 2010년 이후 가격 인상이 없었으며, 그 결과 연탄 제조사에 지급하는 연탄장당 지원 금액은 2010년 191원에서 2012년 274원으로 43% 인상됨.

<표 2-3> 연탄 소비 및 연탄 가격 변화율

(단위: 천 톤)

	2003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연탄 소비	1,191	2,327	2,091	2,289	1,941	1,859	1,822	1,833
연탄 가격 변화(원/개)	10% (167→184)	동결	20% (184→221)	30% (221→287)	30% (287→373)	동결		

주 : 연탄 가격은 공장도가격 기준

자료 : 산업통상자원부, 「석탄산업 통계」, 2013.5

- 석탄산업에 지원하는 정부의 재정은 판매소비지원과 구조조정지원* 항목으로 대부분 지출됨.
- 연탄가격과 비축장관리지원을 내용으로 하는 판매소비지원 비중은 2010년 38.6%에서 2012년 45.0%로 늘어남.
- * 구조조정지원 항목은 폐광대책 및 광해방지지원으로 구성

□ 합리화정책에 의한 지속적인 감산 요구

- 석공 근로자 가운데 23% 정도가 2016년까지 정년을 맞게 되어 전업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2013년에 생산 감축을 요구할 수 있음.
 - 이후 3년이 지난 후 정년 3년 전에 이르는 근로자는 현 근로자의 26% 정도임.
 - 합리화정책이 지속 되는 한 이 같은 반복적인 감산 동력이 상존하므로 앞으로 10년 안에 탄광 근로자 부족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음.
- 합리화정책을 시행하면서 '합리화정책 지원제도' 적용대상 근로자 수를 확정하여 신규 인력 채용의 걸림돌로 작용
 - 신규로 확충된 근로자는 '합리화정책 지원제도' 비적용 근로자로 구분해야 하는데 이에 대해 최근의 판결에서 법원은 차별성을 인정하지 않고 동일한 전업지원금 적용대상으로 인정
 - 다른 관점에서 볼 때 석탄 생산규모 감축을 위해 탄광 근로자를 줄인 상황에서 근로자를 신규로 채용한다는 것이 일관되지 못하게 해석될 수 있음.

Ⅲ. 정책 제언

□ 합리화정책 종결을 위한 선결과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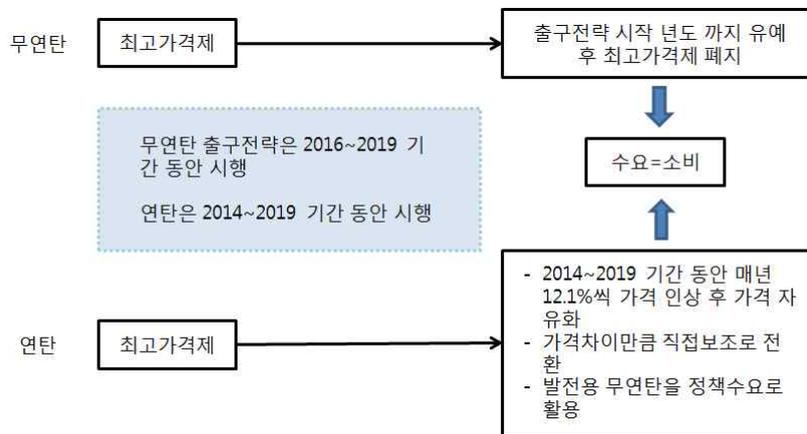
- 합리화정책을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현재 시행되고 있는 무연탄 및 연탄 최고판매가격제의 지양 필요
 - 무연탄 최고판매가격제도는 연탄 소비자에게 정부가 당연히 제공해주어야 하는 의무로 생각하게 하는 요소로 작용
 - 동시에 석공 생산원가 이하 수준에서 무연탄 최고판매가격이 결정되어 석

공의 추가 부채 발생 요인을 제공

- 최고판매가격이 연탄 생산비용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가운데 현 정책은 연탄가격 인상 억제를 통해 적정한 수준에서 연탄수요가 유지되기를 바라는 정책
- 우리나라는 2020년까지 화석연료 보조금을 철폐하기로 G20 회의에서 약속
- 합리화정책은 무연탄 감산을 지향하지만 다른 석탄정책은 연탄수요에 대응하는 공급능력 유지를 추구함.
 - 합리화정책 종결은 광업자대책비(탄광)와 전업지원금(근로자) 지급을 의미
 - 감산지원비는 시간 흐름에 따라 증가하므로 이를 고려한 일시적 폐광이 필요하므로 정부의 재원확보 노력 요구됨.
 - 합리화정책 종결 시점은 연탄수요, 보호계층 에너지 지원제도, 정부 재정부담 능력, 저탄량 수준(수입 무연탄 포함) 등을 고려하여 선택
- 석탄광업은 지역경제 유지에 필요한 산업이라는 인식이나 석탄광 근로자는 전업지원금 수령을 원함.
 - 탄광이 지역경제 유지를 위해 필요한 산업으로 다시 인식되면서 감산 및 폐광이 지역의 이해와 다를 수 있음.
 - 반면 고령화된 탄광근로자는 전업지원금을 받고자 하는 욕구 상존
- 합리화정책 종결을 위해 연탄 보조금 철폐와 연탄 지원효율성 제고를 고려할 때 연탄 수요 주택의 에너지 이용설비 전환 필요
 - 정부 보조금을 통해 원가 이하로 책정됨에도 현재 연탄이용자 중 보호계층에는 연탄쿠폰을 지급
 - 합리화정책이 종결되어야 하는 가장 큰 이유가 연탄수급 불안 가능성 때문

- 인데 연탄쿠폰제는 연탄수요를 감소시키지 못하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
- 연탄쿠폰은 연탄 이용설비 주택이 전제되어야 이용 가능한 것으로 주택의 에너지 이용설비를 교체하면 연탄 수요는 감소됨.
 - 또한 도입 예정인 에너지 바우처의 예상 지원 금액이 연탄쿠폰 금액(16.9만원/가구)에 비해 현저하게 적을 것으로 예상

[그림 3-1] 출구전략 개념도



□ 무연탄부문 출구전략 이행

- 2014~2015년 동안 석공법을 개정(구조조정)하고 석탄광 기업의 대비를 위해 2016년 무연탄 최고판매가격 폐지, 2016년 이후 석탄광 재정지원 중단, 2016년 석탄광 기업에 연탄용 해외무연탄 수입 허용 등 예고 필요
 - 「석탄산업법」 제24조 1항 6호 ‘석탄 및 석탄가공제품을 지원하기 위한 판매가격의 결정 및 고시’의 개정 필요
 - 연탄 가격은 2014년부터 인상 필요하므로 2013년 내에 기재부와 협의
 - 동시에 석탄 가격 인상 일정과 인상 폭, 발전쿼터제 시행을 위한 전력요금 변경 등을 기재부와 협의

- 정부는 「석탄산업법」 제24조 1항 5호 '발전용 석탄의 사용량에 관한 조정'을 보완하여 생산된 국내 무연탄을 발전 부문에서 소비할 수 있도록 국내 무연탄 쿼터제로 변경 필요
- 2016년 이후 석탄광 일시적 폐광을 선택하여 하여 지금의 합리화정책을 종결하고 그 이후 「석탄산업법」 재개정을 통해 합리화정책에 관한 조항을 삭제
- 2016년 국내 무연탄 최고판매가격제 폐지, 국내 무연탄 발전쿼터제 시행

<표 3-1> 무연탄 부문 기간별 출구전략 이행 방안

	2014~2015	2016~2019(4년)
석탄광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무연탄 최고판매가격제 폐지 예고(2014) - 석탄광 재정지원 중단 예고(2014) - 2016년 이후 석탄광 일시적 폐광 예고 - 석탄광 운영사에 해외 무연탄 수입허용(독점 해제) - 해외 무연탄 수입 증대 - 석공 자율경영 예고(구조조정 방안, pp37-38 참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6년 무연탄 최고가격 폐지→①, ②, ③ ① '석공원가>민영원가' 로 인한 석공 가격경쟁력 저하 ② 현 석공의 전환 이후 기업은 민영과 시장에서 경쟁 ③ 연탄 가격 다양화 문제 발생¹⁾ - 일시적 폐광과 동시에 광업자대책비(전업지원금) 지급→① ① 합리화정책 미적용 탄광으로 자율경영 유도 - 2016년 국내탄 발전쿼터제 시행→① ① 산업부, 기재부 협의 필요
정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석탄산업법」 개정 - 광업자대책비 지급기준 고시 개정 - 기재부와 석공 기업분리 및 전력요금 변경 협의 - 산업부 전원믹스정책 조정 - 대한석탄공사법 개정(석공 역할 및 법인 분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석탄산업법」 재개정(합리화정책 관련 조항 삭제)

주: 1) 무연탄 최고판매가격이 폐지되면 품질과 생산자별로 무연탄 시장가격이 다양해지고 이를 구입하여 연탄을 제조하면 연탄공장별로 연탄 출하가격이 상이해질 수 있음.

연탄 출구전략 이행 필요

- 2020년 연탄가격 자율화를 대비하여 2014년부터 연탄 가격을 매년 12.1%씩 2019년까지 인상
- 2016년부터 무연탄 최고판매가격이 폐지되면 무연탄이 시장가격으로 거래되어 연탄 품질과 가격이 다양해질 수 있으므로 2013년 현재 처럼 연탄 생산·공급부문 지원(원탄부분 포함)을 지속하여 연탄 가격의 급격한 변동 억제 필요
- 연탄수요를 연간 180~100만 톤으로 본다면 연탄 생산·공급부문 지원금액은 2013~2018년 기간 동안 매년 1,698억~830억 원 규모에 달함.

<표 3-2> 연탄 부문 기간별 출구전략 이행 방안

	2014	2015	2016~2019(4년)
연탄	- 연탄 가격인상(매년 12.1%씩)	- 2015년부터 연탄 쿠폰제를 '연탄수요가지원제'로 전환하여 2012년 이후 가격인상분 반영하는 소득지원 형태→① ① 지원대상이 '연탄사용기기' 이므로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사업' 병행 필요	- 연탄 가격인상(12.1%/년) 후 2020년부터 연탄 가격 자유화 - '연탄수요가지원제' 지속
정부	- 「석탄산업법」 개정 - 산업부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사업' 예산 확충 - 기재부와 연탄쿠폰제 전환 협의		- 「석탄산업법」 재개정(합리화정책 관련 조항 삭제)
연탄지원예산*	- 152억 원('13), 170억 원('14), 191억 원('15)		- 214억 원('16), 240억 원('17), 269억 원('18), 301억 원('19)

주: * 169천 원 × (1+(12.1/100))^t × 80,192 가구, t = 연도 - 2012

- 2015년부터 연탄 쿠폰을 연탄수요가지원제('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사업')로 전환하여 가정 연탄이용설비를 타 에너지원 설비로 전환하도록 지원
- 연탄 쿠폰 지원대상 가구가 연탄이용 설비를 교체하지 않는다면 매년 135억 원(2012년 80,192가구) 이상을 지원해야 함.

- 연탄쿠폰제 지원대상 가구 전체에 대해 가스보일러를 사용할 수 있도록 바닥 배관공사를 포함한 공사비 일체를 지원하는 경우 총 소요금액은 2,000억 원 정도로 추산
- 현재 연탄 생산·공급부문 지원금액 2년분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므로 연탄사용 기기교체가 필요한 이유임.

□ 석공 구조조정 대안

- 석공의 구조조정 대안 검토는 다음과 같은 전제를 바탕으로 함.
 - 기존 석공의 누적부채와 민영과의 산재보험료율 차이로 인한 비용을 bad company(새로운 석공)가 인수
 - 2015년까지 구조조정을 이행하며, 국내 무연탄 채탄과 해외 무연탄 수입 사업 이외의 모든 사업(해외탄광 개발 등)은 정리함.
 - 「석탄산업법」 개정을 통해 정부의 석탄 공급의무 조항 삭제
 - 구조조정 시나리오 가운데 현 체제 유지를 제외한 모든 시나리오에서는 근로자 전업지원금을 지급하고 법 개정 이전 동안 합리화정책과는 별도의 트랙에서 고용하는 것으로 가정

<표 3-3> 석공 구조조정 시나리오

사나리오	조직 및 기능	소유지배구조
I. 현 상태 유지	- 변화 없음	- 변화 없음
II. 민영화	- 자산 분할, 기능 유지	- 소유권, 경영권 이전
III. 경영권 양도	- 경영권만 양도, 기능 유지	- 소유권 유지, 경영권 양도
IV. 기업 분리 - 1	- 광업소별 독립 법인화 및 bad company로 분리, 기능 유지	- 개별탄광(3개)의 소유권 및 경영권을 독립법인으로 이전, bad company는 변화 없음
V. 기업 분리 - 2	- 광업소별 민영화 및 bad company로 분리, 기능 유지	- 개별탄광(3개)의 소유권 및 경영권 민간에 이전, bad company는 변화 없음

- 다섯 가지의 석공 구조조정 시나리오 중 시나리오 V는 아래와 같이 세 가지로 구분
 - 시나리오 V-1 : 3개의 별도법인 모두를 민영에서 인수
 - 시나리오 V-2 : 3개의 별도법인 중 선별적으로 민영에서 인수
 - 시나리오 V-3 : 3개의 별도법인 모두 민영화 실패(시나리오 IV와 동일)
- 석공 구조조정 시나리오 중 현실적 대안은 시나리오 V-2와 시나리오 IV의 조합임.
 - 나머지 중 시나리오 IV를 제외하면 실현가능성이 낮거나 구조조정 대안으로 볼 수 없음.
 - 구조조정 이후 무연탄 최고판매가격이 폐지된 상황에서 개별 탄광기업을 운영하려면 광업소 내 한계 갱구 폐쇄와 같이 최적 경영조건을 찾으려 노력할 수밖에 없을 것임.
- 만약 구조조정이 실패 한다면 지금의 석공 상태에서 민영과 경쟁하게 하고 무연탄 발전쿼터제 제외 탄광으로 지정하는 것이 합리화정책 종결 목적에

부합

- 한편, 구조조정 이후의 석공에게 석탄광을 포함한 광업 근로자 재교육 혹은 양성 기능 부여
 - 새로운 석공(bad company)에 이러한 기능을 부여하려면 bad company인 석공의 부채와 산재보험료율 차이부분 해결이 선결되어야 함.

IV. 기대 효과

- 국내 석탄산업합리화정책 종결을 통한 새로운 석탄광업 발전 기반 마련에 기여
 - 국내 무연탄 생산 안정화 기반을 제공하여 보다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생산 체제 구축에 기여
 - 자율적인 무연탄 시장 창출을 통해 국내 무연탄 생산 및 거래 기반을 구축함은 물론 경쟁적 환경 하에서 자율적 탄광 경영이 가능하도록 정책적 틀을 제공
 - 누적 부채와 경영여건 악화로 기업성을 상실한 석공에 대한 구조조정 대안 제시를 통해 석공 보유 자원의 안정적 개발 기반 조성에 기여
- 석탄산업 정부보조금 사용 효율 개선 및 안정적인 국내 무연탄 소비 방안 마련에 기여
 - 무연탄 생산, 연탄제조 및 연탄 수송, 연탄 소비(연탄쿠폰제) 등에 광범위하게 지급하고 있는 정부보조금을 연탄 이용설비 전환을 통한 연탄 수요감축과 국내 무연탄 발전용 쿼터제 등으로 보조금을 단순화 하거나 폐지하는

방안 마련에 기여

- 에너지 복지제도 개선안 마련에 기여

< 참고자료 >

1. 참고문헌

국회예산정책처, LH공사, 금융부채 급증은 무리한 사업 확대에 기인, (nabo 보도자료), 2010.10.12.

_____, 국회에 최초로 제출된 「2012~2016년 공공기관 중장기 재무관리 계획」에 대한 평가 보고서 발간, (nabo 보도자료), 2012.11.7.

권혁수, 『석탄산업 장기계획(2011~2015) 수립을 위한 연구』, 한국광해관리공단, 2011.

김명현·이성훈, 「수입탄 혼합비율에 따른 연탄성형 및 연소시험에 관한 연구」, 대한석탄공사 기술연구소, 2010.

대한석탄공사, 내부자료.

_____ 홈페이지.

법제처, 『석탄산업법』.

산업통상자원부, 『석탄산업 통계』, 2013.5.

_____, 내부자료.

소진영·김수일·송무현, 『에너지안보능력 강화를 위한 G20 협력방안 연구』, 에너지경제연구원 수시연구보고서, 2010.

에너지경제연구원, “미 에너지부의 사용 후 핵연료 관리전략”, 월간 세계원전 시장인사이트 2013. 1월호, p.9.

_____, 『에너지정책변천사』, 2006.

에너지경제연구원·지식경제부, 『에너지통계연보』, 2012.

- 이은경·안은경·전수연, 『금융부채 과다 공공기관의 재무 및 사업관리의문제점과 개선과제』, 국회예산정책처 공공기관평가 10-02, 2010.10.
- 정기웅·이상학·박윤환, "인수·합병(M&A)방식 구조조정의 유효성과 성공요인", 응용경제 Vol.6, No.1, 한국응용경제학회, 2004.
- 지식경제부, 「고시 제2012-215호」, 2012.9.14.
- _____, 「고시 제2012-300호」, 2012.12.31.
- 한국민속대백과사전, http://folkency.nfm.go.kr/sesi/dic_index.jsp?P_MENU=04&DIC_ID=551&ref=T2&s_idx=318&P_INDEX=7&cur_page=1 참조).
- 한국에너지재단 홈페이지(<http://www.energylove.or.kr/energy/welfare/welfare.asp?FareNumb=01>, 접속일: 2013.10.08).
- 홍성걸, "한국 석탄산업 구조조정의 정치 경제학", 국민대학교 사회과학연구 23-1, 2010, pp.183-213.
- 국민일보, "폐광지역 주민 위해 쓴다더니... 강원랜드 이익금, 리조트 건설에 평평", 2013.10.8(<http://news.kukinews.com/article/view.asp?page=1&gCode=kmi&arcid=0007632055&cp=nv>, 접속일: 2013.10.9).
- news1. 2013. "하청업체 퇴직해도 석탄감축지원금 지급해야", 2013.10.6(<http://news1.kr/articles/1348526>, 접속일: 2013.10.9).
- 뉴시스, "태백광업 '이달 말 구조조정' 지역경제 위축우려", 2013.6.13 (http://www.newsis.com/article/view.htm?cID=&ar_id=NISX20130613_0012157257, 접속일: 2013.7.8).
- _____, "궁지 몰린 석탄공사, 벼랑에 선 태백시", 2013.6.27(http://www.newsis.com/article/view.htm?cID=&ar_id=NISX20130627_0012189082, 접속일: 2013.7.8).

_____, “광해공단, 폐광지역 연탄보일러 보급”, 2013.7.18(<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3&aid=0005269795>, 접속일: 2013.10.9).

매일노동뉴스, “광산 하청노동자는 대한석탄공사 직원”, 2013.9.10(<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20643>, 접속일: 2013.10.9).

주간동아, “MB정부, ‘저탄소’ 국제협약 실행과일 모색 중”, 2011.1.10(<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37&aid=0000011432>, 접속일: 2013.6.10).

정책 이슈페이퍼 13-04
석탄산업합리화정책 출구 전략

2013년 11월 27일 인쇄

2013년 11월 29일 발행

저 자 유 동 헌 외

발행인 손 양 훈

발행처 에너지경제연구원

437-713 경기도 의왕시 내손순환로 132

전화: (031)420-2114(대) 팩시밀리: (031)422-4958

등 록 1992년 12월 7일 제7호

인 쇄 크리커뮤니케이션(02)2273-1775
